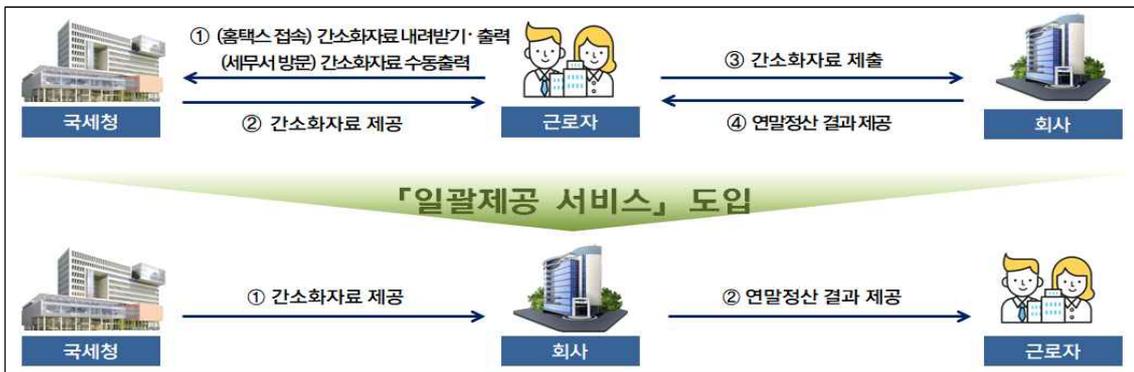


1.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개요

□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란?

-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,
- 근로자(부양가족 포함)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

-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·제출할 수 있고,
-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·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, 소득·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
□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진행 절차

-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,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



○ 간소화자료 조회·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,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거듭날 것입니다.

2.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신청 방법 및 절차

□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이용 신청

-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,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.29.(금)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, 신청 근로자 명단을 '22. 1. 14.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.
- 근로자는 '21. 12. 1.부터 '22. 1. 19.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(동의) 절차를 진행하고,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.

| 이용 신청 절차 |



[근로자] 일괄제공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-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'22. 1. 14.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【참고1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서식(근로자용)

-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,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-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(1.19.)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,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. (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)
- 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(동의)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【참고3】 근로자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(동의) 방법('21. 12. 1.부터 개통 예정)

- '21. 12. 1.부터 '22. 1. 19.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(공동·금융·간편인증, 생체인증)하여 확인(동의)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, 확인(동의)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,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.
-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,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
[회 사]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

-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'22. 1. 14.까지 등록합니다.
 -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,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【참고2】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 및 관리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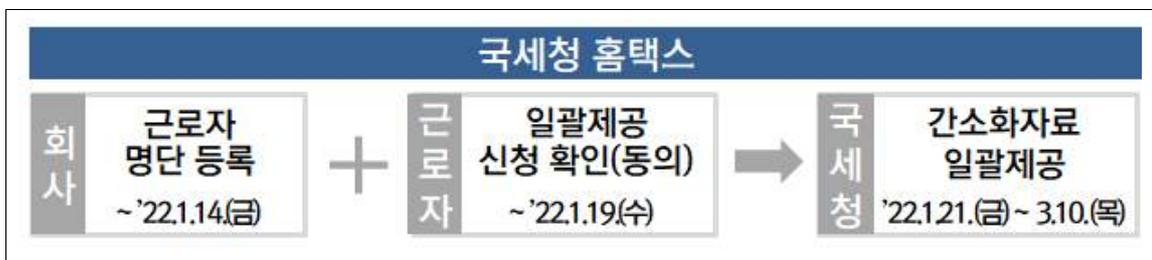
-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홈택스를 통해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.
 -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동의일자(신청서 제출일자)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- 소속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방식으로도 근로자의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.
 -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'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' 화면을 이용하면,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-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,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 -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(숫자 4자리)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요령

-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'22. 1. 14.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,
 - '22. 1. 19.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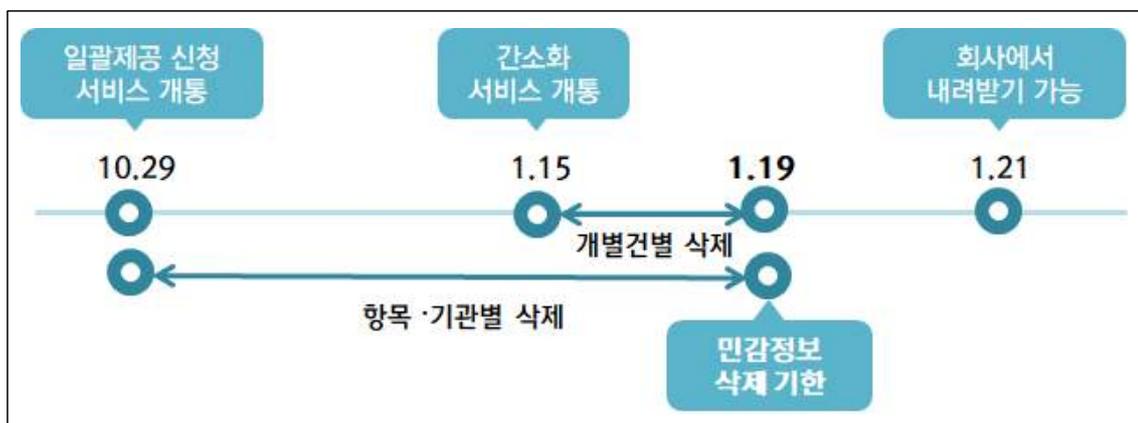
【참고4】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PDF파일을 내려받는 방법



-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,
 -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'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'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(동의)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내(1.19.) 확인(동의)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내려받은 PDF파일과 동일하게 인별 PDF 압축파일을 '22. 1. 21.부터 제공할 예정으로,
 - 명단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간소화자료 파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됩니다.

4. 개인정보 보호 방안

-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,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그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,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
 - * 【참고5】 간소화자료 중 민감정보 삭제 방법
-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,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
- 또한,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(1.15.) 이전부터 항목별(예: 의료비 등)·기관별(예: 업체 사업자등록번호)로 삭제할 수 있으며,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(예: 조회된 상세자료) 삭제도 가능합니다.



- 즉,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(동의) 절차 진행 중 민감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

5.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절차 흐름도

구분	일괄제공 절차 및 유의사항	일정
1단계 (근로자)	<p>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	
2단계 (회 사)	<p>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, 직접 입력 ■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(서면 신청 불가) ■ 회사 업무 수행자는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파일에 적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	'21.10.29. ~ '22.1.14.
3단계 (근로자)	<p>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(공동·금융·간편인증, 생체인증)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,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■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일 이전(1.19.)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,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■ 대상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,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	'21.12.1. ~ '22.1.19.
4단계 (국세청)	<p>국세청은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 구축</p>	
5단계 (회 사)	<p>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별 PDF파일로 제공하고, 분할 압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원이나 용량 제한은 없음 ■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 또는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	'22.1.21. ~ '22.3.10.
6단계 (회 사)	<p>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</p>	

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홍보 자료 안내

- 제도 도입 초기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집,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제도 안내자료

-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 안내, 신청서 양식, 홍보 리플릿 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

[경로]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개인(법인)신고안내 → 연말정산 →참고자료실 →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

※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리플릿 자료는 개별 발송 예정

유튜브 동영상 설명자료

- 유튜버를 활용하여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제도 내용과 근로자·회사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
- * 국세청 공식 유튜브 : 「2021 초고속 연말정산」 영상(제1회 :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, 12.14.등재 예정)

국세매거진 홍보 자료

-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의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홍보 및 설명자료

[경로] 국세청 누리집 → 알림·소식 → 국세청 동영상 → (국세매거진) '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! 간소화자료 제출, 이제 국세청에 맡기세요'